

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

제정	1998. 12. 26	조례 제 151호
개정	2000. 10. 13	조례 제 287호
	2001. 12. 24	조례 제 364호
	2005. 6. 30	조례 제 596호
	2005. 10. 5	조례 제 642호
	2007. 4. 6	조례 제 866호
	2009. 4. 24	조례 제1002호
전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0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5. 2. 27	조례 제1430호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1. 12	조례 제1760호
일부개정	2020. 2. 28	조례 제2005호
전부개정	2021. 9. 27	조례 제2169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6. 8. 12	조례 제2771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6. 8. 12>

1. “주관부서”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2. “정보화부서”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·조정·수행하는 부서(과 단위의 직제)를 말한다.
3. “전산정보자료”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입력·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,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·디스크 등 보조 기억매체를 포함한다.
4. 삭제 <2026. 8. 12>

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
2.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
3. 시민의견 수렴·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
4.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
5.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
6. 지능정보기술의 개발·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·이용시 안정성·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
7.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, 축제 등의 개최

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4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「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 <후단신설 2026. 8. 12>

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부 등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시의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,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2.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
3.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
4.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·활용

5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

6.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

7.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

8. 정보격차해소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·해소

9.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

10. 재원의 조달·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

11.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시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 <후단신설 2026. 8. 12>

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세출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.

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대한

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장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

제7조(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<개정 2026. 8. 12>

1.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
2.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·점검
3.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
4.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자원발굴방안에 관한 사항
5.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
6. 「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디지털 포용 정책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정보화 담당부서의 실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1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
2.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

제9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간사)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.

제4장 지능정보화의 추진

제14조(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)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주민생활, 산업, 복지, 교육,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5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및 외국의 기관·단체·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6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간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과 정보통신망의 보안강화를 위해 자체 통신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지식정보자원의 제공·활용)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제18조(전산정보자료의 제공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9조(정보화 교육)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

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·장비·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강사를 모집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

제20조(정보문화의 창달) 시장은 모든 시민의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
2.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·보급
3.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1조 삭제 <2026. 8. 12>

제22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)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·치유,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23조 삭제 <2026. 8. 12>

제24조(정보보호)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
2.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, 처리, 활용,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
3.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
4.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

하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이용자의 권익보호)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의 생명·신체·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
2.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·공정한 구제
3.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
4.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

제26조 삭제 <2026. 8. 12>

부칙 <2021. 9. 27 조례 제2169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.

제3조(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6. 8. 12 조례 제277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